

보도시점 2026. 9. 9.(수) 10:00 / 배포 2026. 9. 9.(수) 08:30

신유형 기업결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핵심인력의 조직적 이전을 통한 영업 양수가
기업결합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신고의무 면탈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9. 9.부터 9. 30.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신고요령 개정안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가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서 신고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된 협력 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영업양수 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핵심인력을 조직적으로 영입하는 대규모 거래를 잇달아 진행하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의 유형인 ‘영업양수’의 한 형태이므로 신고요령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결합당사자들이 인력확보형 거래가 영업양수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신산업 분야와 같이 조직화된 인력과 해당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이 사업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영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더불어 핵심인력 등이 양수회사에 이전되어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기존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인력확보형 거래로 인하여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거래의 실질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력확보형 거래를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양수금액 산정 기준 및 이행행위의 해석기준도 정비하였다. 기존의 양수금액 및 이행행위 관련 규정은 하나의 포괄적인 영업양수 계약에 의한 대금 지급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거래에 맞추어져 있어, 핵심인력에 대한 경업금지 약정 해제와 기술 협력 등에 관한 다양한 명목으로 계약이 분산될 수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기술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신고요령 개정은 유럽연합,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진행된바,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신유형 기업 결합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30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 정책관실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팩스: 044-200-5224 * 전자우편: jiapark@korea.kr

[붙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혜정 (044-200-4932)
		담당자	사무관	박지아 (044-200-4937)

현 행	개 정
◇ 기타 개정사항 *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 권고(25.7.), 타법(자본시장법) 개정 용어 반영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 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u>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u>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략) 나.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u>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u>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u>실권주</u>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의결권 없는 주식이 총회 의결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를 포함)를 포함한다. 다.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 기준일은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u>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u>의 경우 100분의 15)미만에서 100분의 20(<u>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u>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이 되는 날로 본다.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 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u>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략)</u> 나.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u>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u>실권주(失權株)</u>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의결권 없는 주식이 총회 의결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를 포함)를 포함한다.</u> 다.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 기준일은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u>주권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 15)미만에서 100분의 20(<u>주권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이 되는 날로 본다.</u></u>

현 행	개 정
◇ ‘영업’의 정의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나.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인력·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상표권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신 설〉 다만, 당해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및 설비 매입 등 단순 자산양수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나.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한다. (1)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인력·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상표권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u>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식이 결합되어 사업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포함한다.</u> (3) 다만, 당해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및 설비 매입 등 단순 자산양수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영업의 ‘주요부분’의 기준	
다.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u>주요부분</u>"이라 함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u>주요부분</u>"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수 또는 임차하는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u>양수 또는 임차로 이후 양수 회사가 양도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거나</u>,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가 초래되는 경우 (2)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

현 행	개 정
◇ ‘양수금액’의 산정기준	
영업양수금액에는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채의 인수시 그 부채금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입의 경우에는 임차료 또는 수입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 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라. 영업양수금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채의 인수시 그 부채금액을 포함한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입의 경우에는 임차료 또는 수입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 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조직화된 인력의 경우 해당 거래의 대가로서 양도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 경제적 대가를 그 명목에 관계 없이 포함한다. 〈조직화된 인력 거래의 대가 예시〉 - 이전 인력 관련 권리 포기에 대한 대가 -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재권의 라이선스 대가
◇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의 기준	
마. 법 제11조 제8항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지불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바. (생략)	바. 법 제11조 제8항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금지불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를 한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경우, <u>조직화된 인력의 경우 양도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중단한 경우를 포함한다.</u> 사. (생략) <조항 이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